

의안 번호	제3753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6년 3월 6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6년 3월 16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6년 3월 17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6년 3월 17일

2. 제안이유

- 가. 「지역보건법」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고, 지역특화형 통합건강증진사업 발굴 및 수행을 위한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건강생활지원센터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나.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(안 제3조 ~ 안 제5조)
- 다.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안 제12조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